

대구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149429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경아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의 체결된 2021. 11. 1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5. 11. (주) D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4. 11. 3. 위 회사의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으며, 2014. 12. 1. 위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사무를 위임받아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1060호), 2018. 1. 17. 'C은 원고에게 14,997,101원 및 그 중 4,932,459원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56,100원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2. 20. 확정되었다.

다. C의 아버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1. 7. 19.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처 피고, 자녀 F, G, H, C, I은 2021. 11.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11. 24. 접수 제16003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양수한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보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

별지